

■ 법률 칼럼

주재원(L 비자) 및 E 비자 배우자의 노동허가증



▲ 사진/편집=shutterstock/타운뉴스

주재원(L)이나 E(E-2 포함)비자 배우자들은 노동허가증(EAD)을 신청하실 수 있고 그 노동허가증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 노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허가증의 발급이 지연되면서 과거부터 일을 해 오시던 직장에서 노동허가증 연장을 받지 못해서 일을 못 하게 되는 사태가 속출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국은 2022년 1월 31일 이후부터 E비자 또는 주재원의 배우자(L-2) 또는 E-2 배우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분들에게 새로운 입국 코드를 부여하고 이 분들의 경우는 노동허가증이 없이도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미 작년 11월 이민국은 L과 E 비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없이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는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신분 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인 I-9 서류 작성 시에 증거 서류로 노동허가증 대신에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

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2022년 1월 31일 이후에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 입국 시 부여되는 I-94 신분 코드를 구체적으로 E와 L 비자 배우자들에게 부여하게 되었고 이 코드를 취업 가능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이전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계셨던 E와 L 비자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이민국은 미국에서 I-539 양식을 통해서 신분을 받은 분들은 이민국에 직접 통보서를 보내고, 미국에 비자로 입국을 한 분들은 국경보호처를 직접 접촉해서서 입국 코드를 변경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의 참고를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친권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장례예식보험 (Funeral Insurance)

미국 생활에서 그림자처럼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것이 보험이다. 자동차보험, 집보험, 건강보험, 등등. 자동차보험은 내 잘못으로 큰 사고가 난다면 내 능력 밖의 보상을 보험이 해 주지만 안전운행을 하여 무사고라면 오랫동안 낸 보험료는 배기처럼 날라간다. 아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집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자동차보험, 집보험처럼 꼭 들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아니다. 있으면 좋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큰돈을 만들어 자손들에게 줄 수 있다고도 한다. 소수의 유대인들은 장례보험을 잘 다루어 대대로 윤택하게 산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러하지 못하다.

소액의 생명보험은 대부분 본인의 마지막 예식, 즉 장례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장례예식보험은 생명보험 중의 하나이다. 생명보험은 워낙 종류가 많아서 생명보험 전문가에게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더해 본다. 우리 가족이 이민 와서 받은 시간당 임금이 2불이었고 잘 받으면 4불이었다. 우리보다 일찍 이민 온 분이 보험 대리인이어서 우리에게 생명보험은 필요한 것이라고 권하여 부친께서 작은 액수의 생명보험을 구입하셨다. 수십 년 동안 매달 지불 금액을 내셨다. 어른의 타계 후 보험을 알아보니 연세가 높으셔서 노인 생활하실 때 월 페이먼트 관리를 못하셔서 보험금을 한푼도 못 받게 되었다. 이민 초기 참으로 귀한 돈이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장례예식보험은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생명보험회사에서 관리하는 생명보험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 현재 2만 불의 생명보험이 있으면 저금통장에 2만 불이 있듯이 재산이 된다. 하지만 장례예식보험에 2만 불 있으면 언젠가 사용해야 할 경비로 간주하여 재산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말이나? 나이가 들고 수입이 없어 주정부의

재정보조를 신청할 때 생명보험 2만 불이 있으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장례예식보험은 2만 불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2023년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장례예식보험의 상한선은 2만 불이다. 묘지값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 1만 불 이상하는 고급 관을 사용하지 않는 한 예식비만으로는 2만 불까지 되지 않는다. LA/OC에서 한인이 경영하는 장의사의 예식비는 대등소이다.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장례업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장례 가격은 결정하기 전에 재고, 비교해 볼 만하다.

화장은 관이 필요하지 않기에 매장보다는 장례비가 적게 소요된다. 관을 포함하여 장례예식비를 6천 불이라고 가정해보자. 믿고 신뢰할 장의사를 선정하여 장례예식보험을 구입하면 3년, 5년 혹은 10년까지 분할 납입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6천 불의 예식비가 10년, 20년 후 1만 5천 불이 된다 하여도 오늘 가격으로 계약을 하였기에 증가된 액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선정된 장의사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거나 본인이 이사를 간다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장의사는 바꿀 수가 있다.

낮선 나라에 이민을 와 살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산다. 하지만 미국이 제공하는 혜택도 많다. 알면 잘 준비 할 수 있는데 모르기에 놓치기도 한다. 머지않아 다가올 나의 마지막 예식과 남기고 가는 나의 육신 처리 과정을 내가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결정해 두는 것이 본인에게 표시하는 최대의 예의가 아닐까? 자식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이호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632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 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